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5. 8. 8

나. 회부일자 : '95. 8. 8

3. 제안이유

○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갖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 단체, 법인등을 행·재정 지원함으로써 보다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 나아가 도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자격요건 및 대상분야 (안 제2조)

○ 지정절차 및 지원 (안 제4조)

○ 연구성과 평가회 개최 (안 제6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내 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노력은 개인, 단체, 법인등을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 도민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격요건 및 대상분야에 있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등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되

- 농업분야 : 농축산 품종개발, 신품종 묘목생산, 재배기술 개선등
- 공업분야 : 새로운 기계제작, 신제품 생산등
- 관광분야 :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향토음식 개발등
- 환경분야 : 폐기물 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등으로 하고

둘째,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으로 하며

셋째, 명예연구소 지정에 있어

-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 2회(1월, 7월)로 하되 시장, 군수, 출장소장은 희망자를 파악하여 1개월전까지 기획관실에 제출토록 했으며
-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연구성과 평가회에 있어

-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평가회를 개최하고
- 평가결과 우수안에 대하여는 순위별 일정액의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섯째,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해제에 있어

- 본인 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시
- 본인이 해제를 원할시
- 연구실적이 미흡할시는 지정된 명예연구소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등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